

특허정보의 본격 활용으로 국가 기술혁신 역량 강화한다

- 「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」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('24.1.30) -
-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-
- 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(R&D)·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·제공 -

특허청은 특허·상표·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광범위한 분석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「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')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특허청은 최신 기술, 기업·연구자 정보 등을 포함해 전 세계 5.8억 건의 특허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, 특허정보는 연구개발(R&D) 중복 방지 및 산업·경제·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,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이다.

* 특허정보 확보 추이(건) : ('20) 4.8억 → ('22) 5.3억 → ('23) 5.8억

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국가전략기술을 발굴·분석하거나, 기술유출의 방지 및 기업의 기술개발 등에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.

<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>

「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」의 제정으로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, 특허정보의 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.

「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」은 크게 ①국가안보·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②기술·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·활용 ③특허정보 관련 사업의 근거 마련 등 세 가지다.

<기술유출 방지 및 연구개발(R&D)·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 분석·제공>

① 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·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, 분석결과를 관계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.

② 연구개발(R&D)·산업지원을 위해 발명자 정보(공개정보)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하고, 이를 적시에 가공·분석해 범국가적 연구개발(R&D) 및 기술·산업 관련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.

③ 특허정보 체계(시스템)·데이터베이스(DB)의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특허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게 되었다.

국무회의를 통과한 「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」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되고,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·제공 관련 세부사항 및 국가 안보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내용·절차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8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“이번 산업재산정보 활용 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전략기술 등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특허정보가 적극 활용되어 특허 거대자료(빅데이터) 기반의 산업·경제·안보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: 제정법률안 구성

담당 부서	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	책임자	과 장 직무대리	강택중 (042-481-5160)
		담당자	서기관	황인선 (042-481-5084)

구분	주요내용
<p>제장총칙</p>	<p>제1조(목적), 제2조(정의),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,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</p>
<p>제장산업재산정보의관리 및활용촉진장위수립</p>	<p>제5조(기본계획 수립), 제6조(시행계획 수립), 제7조(실태조사)</p>
<p>제장산업재산정보의관리 및활용지원</p>	<p>제8조(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의 추진), 제9조(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·관리), 제10조(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), 제11조(분류 정보의 이용 촉진), 제12조(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), 제13조(통계·지표의 조사·분석), 제14조(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), 제15조(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제공), 제16조(국가·민간 연구개발 산업재산 정보 활용), 제17조(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)</p>
<p>제장산업재산정보의관리 및활용촉진을위한 기반 구축</p>	<p>제18조(연구개발의 지원), 제19조(전문인력 양성), 제20조(인식제고), 제21조(국제협력), 제22조(보안 및 품질관리), 제23조(민간 산업재산정보서비스 개발·상용화), 제24조(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), 제25조(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)</p>
<p>제장보칙</p>	<p>제26조(업무의 위탁), 제27조(비밀유지 의무), 제28조(청문), 제29조(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)</p>
<p>제장벌칙</p>	<p>제30조(벌칙), 제31조(과태료)</p>